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29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3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3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12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20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5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 대상 명확화	25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집행·관리 근거 유지 필요	27
3.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근거 유지 필요	33
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법적 지위 명확화	36
5. 양벌규정 적용 대상 정비	39
6. 부칙	44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2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17.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장애를 예방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
- (2) 장애인을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
- (3)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39조까지).
- (4)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및 장애인권익 도모를 위한 단체를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76조까지).
- (5)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 (6)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함)은 「장애인권리보장법」¹⁾ 제정에 따라

현행법 중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이관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장애인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은 정리하고,

「장애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재편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지원,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학대 예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내용으로,
- 총 8개 장, 10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법과 전부개정안 비교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제4조(장애인의 권리).	

1)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5호로 제정되었으며,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8조(차별금지 등)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0조(교육)	
제21조(직업)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27조(주택 보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장 복지조치	
제31조(실태조사)	
제32조(장애인 등록)	제7조(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8조(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9조(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10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12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13조(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4조(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15조(자료의 요청)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16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17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18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19조(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6조 삭제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20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21조(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 · 보급 지원 등)	제23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 · 보급 지원 등)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	제24조(장애인 보조건 인식개선)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25조(자금 대여 등)
제42조(생업 지원)	제26조(생업 지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27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생산품 구매)	제28조(생산품 구매)
제45조 삭제	
제45조의2 삭제	
제46조(고용 촉진)	제29조(고용 촉진)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0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31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국유 · 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 · 무상 대여)	제32조(국유 · 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 · 무상 대여)
제49조(장애수당)	제33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34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35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37조(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8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39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3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40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41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42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43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44조(성 관련 상담 지원)

「장애인복지법」	전 부개정안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4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45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46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47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48조(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49조(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1조(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2조(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3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4조(금지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5조(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6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7조(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8조(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60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의 특례)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61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6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63조(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64조(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59조의20(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제65조(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6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7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8조(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9조(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70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71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제61조(감독)	제72조(감독)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73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제74조(중앙수어통역센터)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75조(단체의 보호·육성)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7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5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77조(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8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9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6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80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81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82조(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83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84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5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86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87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88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9조(수수료)
제8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제90조(비용 부담)
제80조(비용 수납)	제91조(비용 수납)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92조(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93조(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비용 보조)	제94조(비용 보조)
제82조(압류 금지)	제95조(압류 금지)
제83조(조세감면)	제96조(조세감면)
제83조의2(청문)	제97조(청문)
제84조(이의신청)	제98조(이의신청)
제85조(권한위임 등)	제99조(권한위임 등)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100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제8장 벌칙
제86조(벌칙)	제101조(벌칙)
제86조의2(벌칙)	제102조(벌칙)
제87조(벌칙)	제103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제104조(가중처벌)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5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양벌규정)	제106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제107조(과태료)

주1): 전부개정안에서 음영 표시한 조항은 현행법상 관련 조항을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이동하거나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한 조항임.

주2): 음영 표시를 하지 않은 전부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45조는 현행법상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거나 장애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정책 방향 등을 일부 변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이관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장애인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및 각종 지원 사업 등 구체적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편함.
- 둘째,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나, 전부개정안은 장애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재정의함. 다만, 전부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셋째, 현행법 제1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자립생활, 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중심으로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비함.
- 넷째, 현행법 제3장 ‘복지 조치’에 규정된 장애인 등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안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으로 통합·재배열함.
- 다섯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 및 장애동료 간 상담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개편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

- 여섯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이용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정비하고, 시설 이용자의 선택권, 정보 제공, 인권 보호 및 시설 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개편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
- 일곱째, 장애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보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조문 위치와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함.
- 여덟째,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비용 지원, 급여의 압류 금지, 벌칙 및 과태료 등 장애인복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편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

2. 입법 배경 및 검토 의견

가. 입법 배경 및 취지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조치와 재활·자립 지원의 법적 틀이 마련된 이후,

1989년, 1999년 및 2007년의 세 차례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재활 중심에서 권리보장,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 1989년 전부개정에서는 법 제명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 1999년 전부개정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정보접근, 주거지원, 재활서비스, 장애인보조견 및 장애인생산품 구매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확대하여 변화된 장애인복지 수요에 대응하였음.
- 2007년 전부개정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 참여,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지원, 정보접근성 강화,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체계를 재편하고 법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음

< 「장애인복지법」 제정 및 전부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

구분	입법 취지	주요 내용
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1. 6. 5., 법률 제3452호)	산업화·도시화 등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속에서 심신장애자의 수 증가와 복지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의료·직업 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재활·자립과 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	시·군·구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검진·재활상담, 의료·보건지도, 복지시설 입소·통원 조치, 보장구 교부·수리 및 비용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
제1차 전부개정 (1989. 12. 30., 법률 제4179호)	심신장애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면서 법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비·자녀교육비 지급,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요청 및 한 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
제2차 전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931호)	장애인의 인간 존엄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통신·방송시설 개선, 수화통역·폐쇄자막방송·음성도서 보급, 공동주택 우선 분양·임대, 주택 구입·임차 및 개·보수 지원, 장애인보조견 육성·보급,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및 장애인생산물품 구매 등의 근거를 마련
제3차 전부개정 (2007. 4. 11., 법률 제8367호)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문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장애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여성장애인 기초학습·직업교육 및 임신·출산 지원, 화면해설·자막해설·점자자료 제공, 정보통신 접근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근거를 마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 후 정리

□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이후 그간 장애인의 보호와 재활 중심 체계에서 권익보장과 사회참여, 자립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여전히 신체 손상에 중점을 둔 의료적 관점에 기초한 ‘장애’ 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미흡, 수요자를 배제한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 등 변화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과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²⁾

□ 이 같은 문제의식은 장애정책의 기본 방향을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고, 그 결과 최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202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권리보장 중심의 기본법 체계로 분리·확대하여 규정하였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 요인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상태로 새롭게 정의하였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결정 참여권 등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위원회,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장애영향평가

2) 남궁은. (202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월간 한국장총, Vol.429.

등 권리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미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장애인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 1: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사·대체 조문),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을 정리하고, 장애인 등록, 생활안정, 자립생활,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보조기구 및 전문인력 등 구체적인 복지 지원의 제공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을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집행 중심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자립생활,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운영, 장애인보조기구 및 전문인력 등 구체적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 법률 간 중복을 줄이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집행상 명확성을 높여려는 취지임.

나. 총괄 검토

□ 전부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조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배열하면서,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규정된 점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중복·유사한 규정을 정리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학대 대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 구체적인 복지지원 제도의 집행 근거를 중심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즉,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의 기능과 규율 범위를 재조정하고, 기존 복지 지원 조항을 집행 중심의 법체계로 재배치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체로 ① 권리·정책총괄 조항(현행법 제1장 및 제2장 기본정책의 장구)은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이동·확대되었고, ② 장애인 등록·급여·서비스·시설·학대 대응·전문인력 관련 조항은 전부개정안에서 장과 조문번호를 바꾸어 유지되며(현행법 제3장 복지 조치→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 등), ③ 현행법의 가지 조항 및 삭제 조항 정리 후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음.

□ 구체적인 조문 재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참고자료 2: 「장애인복지법」 조문별 개편·이관 현황: 전부개정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 첫째, 현행법 제1장 총칙에 규정된 장애인의 권리, 정책결정 참여, 차별금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정책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권리 중심으로 분리·확대하여 규정되었으므로,

전부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중복·유사한 규정을 정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복지지원에 필요한 일부 총칙 규정을 유지함.

□ 둘째, 현행법 제2장 기본정책의 장구에 규정된 주요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건강권, 교육권, 직업선택권, 이동 및 접근권, 정보 접근권, 안전권, 참정권, 자립생활 및 문화·여가활동에 관한 권리로 규정되었으므로, 전부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장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조항을 정리함.

□ 셋째, 현행법 제3장 복지 조치에 규정된 장애인 등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전부개정안 제2장 ‘장애인 복지 지원’으로 이동·재배열되어 유지됨.

□ 넷째, 현행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은 전부개정안 제3장으로 이동되어 유지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자립생활에 관한 권리 조항과 연계됨.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전부개정안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 및 상담 지원 등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규정하는 구조임.

□ 다섯째, 현행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감독 등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전부개정안 제4장으로 이동·재배열되어 유지됨.

□ 여섯째, 현행법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및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전부개정안 제5장 및 제6장으로 이동·재배열되어 유지됨.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부개정안에서는 자격증 교부, 국가시험, 보수교육 및 자격정지·취소 등 구체적인 자격관리 제도를 규정함.

□ 일곱째, 현행법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은 전부개정안 제7장 및 제8장으로 이동·재배열되어 대체로 유지됨.

□ 이상과 같이 전부개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정책의 기본원칙·추진체계가 규정된 점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구체적인 복지지원 제공·집행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양 법률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과 중복·유사한 현행법 조항을 정리하고 나머지 조항을 전부개정안에서 이동·재배열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해지거나,

현행법상 개별 제도의 법적 근거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부개정안 제5조의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의 일반적 정의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인식개선교육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체계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근거가 전부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전부개정안의 시설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와 향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조문번호가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벌칙·위임·인용조문과 관계 법률의 관련 규정이 개편된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시행일 및 경과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인 흐름과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체계에 맞춰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 등록, 복지서비스 및 구체적 지원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적인 “장애인”(제2조제1항)과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제2조제2항)을 구분하며, 후자의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등이 모호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부개정안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체계에 따라 동일·유사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일부 조문은 삭제할 경우 법적 공백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8조제2항(차별금지 등), 제20조제4항(교육)은 각각 제87조제1호, 제88조 벌칙 조항과 연결되므로 벌칙 조항 삭제까지 고려하여 삭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현행법 제21조(직업), 제27조(주택보급),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등은 구체적인 사업 및 위탁, 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가 되므로, 삭제 시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개정안 제46조에서는 현행법의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를 수정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법 개정 전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재정경제부

- 전부개정안 제6조³⁾ 관련,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삭제가 필요함.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부개정안 제22조 및 제96조⁴⁾ 관련, 조세감면 정책의 운용 방향을 개별법에서 정하는 것은 재정 상황 및 세입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조세정책 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2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6조(조세감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제4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7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다. 국세청

□ 전부개정안 제10조제4항⁵⁾ 관련, 과세정보의 요구 항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과세 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요구기관, 이용 목적, 요구 정보,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함⁶⁾

라. 관계 단체

단체 명	주요 의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 전부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폐쇄 조항을 유지한 점,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및 정책결정 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규정을 삭제한 점은 문제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최종증장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거주인의 주거와 돌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선명령·시설장 교체·법인 임원 해임 등 다른 제재 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5)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0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출국 또는 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 또는 출소, 병무,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법제처·행정안전부 표준입법모델(2014.9.)

	• 의사소통 능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여부, 시설 선택권, 시설 이용 계약 및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지원·동의와 전문의의 의사능력 평가 등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이념, 권리보장,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복지 지원과 서비스 제공 체계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각 법률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전 부개정안에 찬성함.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추어 「장애인복지법」의 기능을 복지서비스와 지원체계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장애예방에 관한 규정 삭제, 장애인의 정의 재정의, 자기결정권 및 자립생활 지원 명시, 현행 지원체계의 권리 중심 재정비 등 법안 전반에 찬성함.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 권리 중심 모델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인별 맞춤형 의료 지원, 2차 장애 예방 등 보건의료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참여 규정과 중증장애인 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에 보건의료 지원 필요도, 노인성 질환 동반 여부, 24시간 연속 돌봄 및 안전 확보 필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및 지역사회 자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시설 폐쇄 시 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생활 지원의 독립된 법적 지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제46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신요양시설 협회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내부 보고·회의 또는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보고가 신고를 갈음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분리·판정 권한이 시설·종사자·이용 장애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응급조치의 기간·재심사,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변호사 참여, 판정 결과 통지·열람·이의신청, 조사 인력 자격 및 지도·감독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 대상 명확화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전부개정안 제2조는 제1항에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제2항에서는 이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만으로 파악하기보다 사회적 장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국제적 흐름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장애인의 일반적 개념과 이 법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구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 전부개정안 제5조에서는 현행법 제15조와 같이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부개정안 제2조제1항은 장애인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2조제2항은 그 중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특정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됨.

특히, 전부개정안 제2조제1항은 현행법보다 넓은 관점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5조에서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규정할 경우 이 법의 적용 제한 대상이 제2조제1항의 장애인 일반을 의미하는지, 제2조제2항의 적용대상 장애인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 같은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전부개정안 제5조의 적용 대상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타당하므로,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집행·관리 근거 유지 필요

현행법	전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	-	제48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장애인 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	전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을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 단체의 장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		

현행 법	전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		

현행법	전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현행법	전부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의 장애인에게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 실시 결과 점검, 교육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점검 결과의 공표 및 기관평가 반영, 전

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5조의2**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인식개선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전문강사 배치, 교육자료 보관, 지정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전부개정안에는 현행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직접 대응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8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과 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사회적 인식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국가기관 등의 교육 실시 의무, 실시 결과의 제출·점검·공표,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위탁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집행·관리체계를 직접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기본원칙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인식개선교육 제도의 연속성과 집행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교육의 실시·점검 및 교육기관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집행·관리 근거 유지 필요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30조의2**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휴식 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전부개정안에는 현행법 제30조의2에 대응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전부개정안에는 장애아동, 장애여성, 출산·양육 등 가족지원과 관련될 수 있는 일부 조항이 있으나, 이는 주로 현행법상 개별 지원 규정을 전부개정안의 체계에 맞추어 재배치한 것이며,
-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세부 유형, 수행기관 지정, 지정취소 및 지정기준 등을 직접 대체하는 조항은 확인하기 어려움.

□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상담·휴식 지원, 사례관리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법률상 집행 근거가 명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음.⁷⁾

- 특히, 수행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위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사업 수행기관 관리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7)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총 125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및 수행 기관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가 전부개정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법적 지위 명확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 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 제58조제1항제2호의2**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규정하고, 해당 시설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보호·재활 중심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⁸⁾
- 다만, 도입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의 관계,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될 경우 자율성과 권익옹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⁹⁾¹⁰⁾ 등도 제기된 바 있음.

□ 그런데 **전부개정안 제46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응하는 시설 유형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8) 2024년 1월 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에 추가되어,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됨.

9) 장애여성공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2024. 8. 22.

10) 이재상. [이슈특집]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광역-지역 이원화해야. 미디어생활. 2024. 12. 5.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법적 지위, 관련 하위 법령 적용 여부,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체계 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전부개정안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서 제외할 것인지, 제외한다면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법적 지위와 지원·관리 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양벌규정 적용 대상 정비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2조 및 제10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이는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의 업무상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부과하려는 취지임.¹¹⁾

□ 전부개정안 제106조는 이러한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102조 및 제103조의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89조는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1) 법제처. (2022). 법령입안·심사기준.

전부개정안에서와 같이 현행법 제86조에 대응하는 제101조가 제외될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 범위가 현행보다 축소될 수 있음.¹²⁾

- 전부개정안 제101조는 장애인학대행위에 관한 벌칙뿐 아니라 금융정보등의 목적 외 사용·제공·누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방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 제101조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일괄 제외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또는 개인 사용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전부개정안 제106조의 적용 대상에 현행법 제86조에 대응되는 제101조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벌칙) ① 제54조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4조제3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한편, 전부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88조(벌칙)의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	1.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4조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4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10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4조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 제66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3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한 자 9. 제7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한 자 11.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10.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 제8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3. 제8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8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에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3. 삭제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¹³⁾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전부개정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권리보장 및 정책추진체계 관련 규정 등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체계로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위원회,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¹⁴⁾

13) “이 법 가운데”의 오기로 보임.

14)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장애인정책책임관 및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4조에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에 관한 사항을 제3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사·대체 조문).

- 부칙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해당 규정으로 정비하고 있음.¹⁵⁾

이에 따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먼저 시행되고 전부개정안이 이후 시행될 경우, 장애인의 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위원회,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일정 기간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 있음.

- 이 같은 규정의 병존이 곧바로 법률상 효력 충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존재하게 될 경우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기관 명칭 및 권리·의무 승계, 다른 법률의 인용조문 적용 등 집행 과정에서 혼

15) 「장애인권리보장법」 부칙(법률 제21695호, 2026.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립·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각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로 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을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일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부개정안 부칙 제6조는 다른 법령에서 종전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전부개정안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인용조문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으나,

다른 법률의 개별 인용조문 정비를 대체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명시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구법 인용 법령을 신법 또는 해당 조항 인용으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임.¹⁶⁾

따라서 다른 법률의 인용조문 정비 누락에 따른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개별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국회사무처. (2015). 법안검토보고서 작성 표준교재.

〈참고자료 1: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사대체 조문〉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9조(존엄권)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정신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두 종류 이상인 장애인이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소수유형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제10조(평등권) 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실현은 방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제27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장애인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4. 장애인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법 5.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 및 개선과제 6.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및 운용 방안 7.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8. 그 밖에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종합계획 수립 시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평가 등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제29조(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주요 장애인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동 및 접근성, 자립지원 등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의 평가 및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인정책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이하 “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장려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에 제1항에 따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발생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	제18조(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고용, 교육, 체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과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권) ①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능력,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추어 시설의 정비 및 자료의 제공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제15조(직업선택권) ① 장애인은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지식 및 정보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 서비스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을 포함한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 장애인 및 복지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이동 및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 수어 통역, 안내 보조,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 인적·물적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연구, 개발, 확산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권) ①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이하 이 조에서 “학대등”이라 한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등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비상재해·재난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제48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장애인 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⑪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 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 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홍보영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장애인정책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①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 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9. 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0.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 11.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를 평가하고 장애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단체의 장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3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2: 「장애인복지법」 조문별 개편 · 이관 현황: 전부개정안 및 「장애인 권리보장법」 반영 내용 · 조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1장 총칙	총칙 장을 유지하되 복지지원 중심의 총칙으로 정리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권리보장 및 장애인 정책 총괄 사항을 별도의 총칙으로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장 총칙)	분리 반영: 복지지원 기능과 권리·정책총괄 기능을 분리
제1조(목적)	복지지원·생활안정·사회활동 참여 증진 중심으로 목적을 정비하고, “장애발생 예방” 문구를 삭제 (전부개정안 제1조)	차별금지, 자립생활, 동등한 기회 및 권리 증진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1조)	분리 반영: 복지지원 목적과 권리보장 목적을 분리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회참여 제약으로 재정의하되, 법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상 장애 종류·기준 해당자로 한정 (전부개정안 제2조)	“장애”와 “장애인”을 사회적 장애 개념에 따라 정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3조)	분리 반영: 정의체계 재구성 및 복지법 적용대상 한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현행 기본이념을 유지 (전부개정안 제3조)	차별과 배제 없는 권리 존중, 기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으로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2조)	분리 반영: 기본이념 유지·확대
제4조(장애인의 권리)	-	현행의 존엄, 사회참여, 정책결정 참여권이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정책결정 참여권 등으로 세분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9조~제13조 등)	이관·확대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	장애인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수렴 규정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이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4조제1항)	이관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여성의 권리, 모성보호, 건강유지, 능력개발, 폭력·학대 보호 등으로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2조)	이관·확대
제8조(차별금지 등)	-	차별금지, 평등권, 비하·모욕 금지, 부당한 영리행위 금지 등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조제2항·제3항, 제10조)	이관·확대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의 자립 지원,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책임을 중심으로 유지 (전부개정안 제4조)	권리보장, 사회적 장벽 제거, 차별 방지,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지원 등으로 책무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조)	분리 반영: 복지책임과 권리보장 책무를 분리
제10조(국민의 책임)	-	장애인의 인격 존중 및 권리보장을 위한 협력 의무 등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조)	이관·재구성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재구성하고, 자원·전달체계·권리보장 실태 등을 포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	이관·확대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	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제6항)	이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11조(장애인 정책조정위원 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위원회로 재편하고 권리보장 중심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	이관·명칭 변경: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변경
제12조(장애인 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규정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	이관
제13조(지방장 애인복지위원 회)	-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재구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	이관·명칭 변경: 위원회의 명칭 변경
제14조(장애인의 날)	-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규정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6조)	이관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로 유지 (전부개정안 제5조)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8조)	분리 반영: 적용범위 조정 기능과 기본법 우선관계 기능을 분리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재정 조치 책무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조 제1항)	이관·통합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	장 자체는 전부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주요 내용을 권리보장 및 권리실현에 관한 장으로 이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장 및 제4장)	장 체계 개편
제17조(장애발 생 예방)	-	복지법 목적에서는 삭제하되 질병·사고 및 장애의 예방에 관한 정책으로 존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9조)	이관: 장애 자체의 예방과 질병·사고 등 손상 예방 정책의 구분 설명 필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장애 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조항과 연계하여 일부 반영 (전부개정안 제18조)	건강권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로 재구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7조·제18조)	분리 반영: 복지서비스 규정과 권리 규정으로 분리
제19조(사회적 응 훈련)	-	재활서비스와 사회복귀 지원 내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8조)	이관
제20조(교육)	-	교육권, 평생교육, 진로교육, 입학 차별금지 및 교육기관 편의 제공 등으로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0조)	이관·확대
제21조(직업)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유지 (전부개정안 제29조)	직업선택권,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직업지도·훈련·취업알선 등을 권리로 확대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5조)	분리 반영: 구체적 지원과 권리보장 기능을 분리
제22조(정보에 의 접근)	-	지식 및 정보 접근권, 방송·행사 접근성, 의사소통 보조기구, 전문인력 양성·파견 등으로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2조)	이관·확대
제23조(편의시설)	-	이동 및 접근권, 공공시설·교통수단 이용, 보편적 디자인 등으로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1조)	이관·확대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안전권, 비상재해·재난 대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	이관·확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8조)	• 이관: 교육 실시 결과 점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정보 시스템 등 세부 집행 장치의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	-	• 미반영: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 위탁 체계의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제25조의3(홍보 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규정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49조)	• 이관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	• 선거권 행사 편의 제공, 수어통역·안내보조·선거용 보조기구 지원으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2조제3항)	• 이관·확대
제27조(주택 보급)	-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제4항)	• 이관
제28조(문화환 경 정비 등)	-	• 문화향유·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 권리로 세분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3조~제25조)	• 이관·확대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근거로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7조)	• 이관·재구성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전환하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8조 및 부칙 제5조)	이관·기관 전환: 기관 명칭과 기능 변경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제, 공공시설 이용료 및 운임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을 유지 (전부개정안 제6조)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 일반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4조제2항)	분리 반영: 구체적 시책과 권리 원칙을 병행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	미반영: 가족 지원 사업 및 수행기관 지정·취소 규정의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장으로 개편 (전부개정안 제2장)	-	장 체계 개편
제31조(실태조사)	-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전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	이관·확대
제32조(장애인 등록)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조)	-	유지·이동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조)	-	유지·이동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조)	-	유지·이동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0조)	-	유지·이동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1조)	-	유지·이동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2조)	-	유지·이동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 관리)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3조)	-	유지·이동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4조)	-	유지·이동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5조)	-	유지·이동
제33조(장애인 복지상담원)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6조)	-	유지·이동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7조)	-	유지·이동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18조)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연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8조)	분리 반영: 구체적 서비스 조항과 권리 조항 연계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 근거를 유지하여 이동하고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전부개정안 제19조)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근거를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2조제6항)	분리 반영: 지원조항 유지 및 인용체계 정비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36조 삭제	-	-	• 삭제 조문: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0조)	-	• 유지·이동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1조)	-	• 유지·이동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2조)	-	• 유지·이동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3조)	-	• 유지·이동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4조)	-	• 유지·이동
제41조(자금 대여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5조)	-	• 유지·이동
제42조(생업 지원)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6조)	-	• 유지·이동
제43조(자립 훈련비 지급)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7조)	-	• 유지·이동
제44조(생산품 구매)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28조)	-	• 유지·이동
제45조 삭제	-	-	•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제45조의2 삭제	-	-	•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46조(고용 촉진)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29조)	직업선택권 및 고용 지원에 관한 권리 조항과 연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5조 제6항)	분리 반영: 구체적 지원과 권리 조항 연계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0조)	-	유지·이동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1조)	-	유지·이동
제48조(국유·공 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2조)	-	유지·이동
제49조(장애수 당)	장애수당 지급 근거를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33조)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와 연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4조)	분리 반영: 급여 규정과 권리 조항 연계
제50조(장애아 동수당과 보호수당)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4조)	-	유지·이동
제50조의2(자 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5조)	-	유지·이동
제50조의3(금 용정보등의 제공)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6조)	-	유지·이동
제50조의4(장 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7조)	-	유지·이동
제51조(자녀교 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8조)	-	유지·이동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39조)	-	유지·이동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장을 제3장으로 이동 (전부개정안 제3장)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 및 주거생활 권리를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	분리 반영: 구체적 지원 체계와 권리 보장 체계 연계
제53조(자립생활지원)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40조)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로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	분리 반영: 지원 시책과 권리 조항 연계
제54조(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1조)	-	유지·이동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2조)	-	유지·이동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3조)	-	유지·이동
제56조의2(성관련 상담지원)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4조)	-	유지·이동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복지시설 및 단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제4장으로 이동 (전부개정안 제4장)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과 협의회에 관한 기본 규정을 별도로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제53조)	분리 반영: 시설 운영은 복지법, 단체 관련 기본사항은 양 법률에 분산
제57조(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 등)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으로 방향을 수정 (전부개정안 제45조)	-	내용 정비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	현행 규정을 유사하게 유지하여 이동.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미규정 (전부개정안 제46조)	-	유지·이동
제59조(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7조)	-	유지·이동
제59조의2 삭제	-	-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에의 취업제한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8조)	-	유 지 · 이 동 : 2027년 5월 12일 시행예정 조문 반영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49조)	-	유지·이동
제59조의5(불 이익조치 등의 금지)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0조)	-	유지·이동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1조)	-	유지·이동
제59조의7(응 급조치의무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2조)	-	유지·이동
제59조의8(보 조인의 선임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3조)	-	유지·이동
제59조의9(금 지행위)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4조)	-	유지·이동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5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6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7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8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59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0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1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2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권 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3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 시스템)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4조)	-	• 유지·이동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5조)	-	• 유지·이동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60조(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6조)	-	• 유지·이동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7조)	-	• 유지·이동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8조)	-	• 유지·이동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69조)	-	• 유지·이동
제60조의5(상 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0조)	-	• 유지·이동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1조)	-	• 유지·이동
제61조(감독)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2조)	-	• 유지·이동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3조)	-	• 유지·이동
제62조의2(중 앙수어통역센 터)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4조)	-	• 유지·이동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규정을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75조)	•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유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	• 중복 가능: 양 법률 간 중복 여부 확 인 필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64조(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규정을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 76조)	장애인단체협의회에 관한 유사 규정을 별도로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3조)	중복 가능: 양 법률 간 중복 여부 확인 필요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장을 제5장으로 이동 (전부개정안 제 5장)	-	장 체계 개편
제65조(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구체적 지원·관리 규정을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 77조)	이동 및 접근권과 정보 접근권의 실현수단으로 연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1조·제22조)	분리 반영: 구체적 지원과 권리 조항 연계
제66조 삭제	-	-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제67조 삭제	-	-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제68조 삭제	-	-	현행법상 이미 삭제된 조문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8조)	-	유지·이동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79조)	-	유지·이동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전문인력의 자격·시험·보수교육 등에 관한 장을 제6장으로 이동 (전부개정안 제 6장)	장애인정책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원칙을 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3조)	분리 반영: 구체적 자격제도와 전문인력 양성 원칙을 분리
제71조(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유지하여 이동 (전부개정안 제80조)	장애인정책 전문인력양성 원칙과 연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3조)	분리 반영: 구체적 지원과 기본원칙 연계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1조)	-	유지·이동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2조)	-	• 유지·이동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3조)	-	• 유지·이동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4조)	-	• 유지·이동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5조)	-	• 유지·이동
제75조(보수교육)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6조)	-	• 유지·이동
제76조(자격취소)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7조)	-	• 유지·이동
제77조(자격정지)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8조)	-	• 유지·이동
제78조(수수료)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89조)	-	• 유지·이동
제8장 보칙	• 보칙에 관한 장을 제7장으로 이동 (전부개정안 제7장)	-	• 장 체계 개편
제79조(비용 부담)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0조)	-	• 유지·이동
제80조(비용 수납)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1조)	-	• 유지·이동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2조)	-	• 유지·이동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3조)	-	• 유지·이동
제81조(비용보조)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4조)	-	• 유지·이동
제82조(압류금지)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5조)	-	• 유지·이동
제83조(조세감면)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6조)	-	• 유지·이동
제83조의2(청문)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7조)	-	• 유지·이동
제84조(이의신청)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8조)	-	• 유지·이동
제85조(권한위임 등)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99조)	-	• 유지·이동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00조)	-	• 유지·이동
제9장 벌칙	• 벌칙에 관한 장을 제8장으로 이동하고 조문 재배열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전부개정안 제8장)	-	• 장 체계 개편
제86조(벌칙)	• 현행 벌칙을 재배열하여 반영 (전부개정안 제101조)	-	• 유지·이동 : 벌칙 대상 인용조문 확인 필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반영 내용·조문	「장애인권리보장법」 반영 내용·조문	개편 유형
제86조의2(벌칙)	• 현행 벌칙을 재배열하여 반영 (전부개정안 제102조)	-	• 유지·이동 : 벌칙 대상 인용조문 확인 필요
제87조(벌칙)	• 현행 벌칙(제1호 제외)을 재배열하여 반영 (전부개정안 제103조)	-	• 유지·이동 : 벌칙 대상 인용조문 확인 필요
제88조(벌칙)	-	-	
제88조의2(가중처벌)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04조)	-	• 유지·이동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05조)	-	• 유지·이동
제89조(양벌 규정)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06조)	-	• 유지·이동
제90조(과태료)	• 현행 규정을 동일·유사하게 유지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 (전부개정안 제107조)	-	• 유지·이동

자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분석 후 작성